

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6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 18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각종 정책·정보 등 대시민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그에 따른 보상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(안 제11조제3항 보완) 현행 조례상 ‘기사’ 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‘기고 또는 기사’ 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
 -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·구체화하고,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
- (안 제11조제4항 신설)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금품 등 지급에 관한 근거 신설
 -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한 시민에게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의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3. 22. ~ 2023. 4. 1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**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기사” 를 “기고 또는 기사” 로, “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.” 를 “일정액의 원고료(상품권을 포함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독자 참여, 퀴즈, 이벤트,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, 상품권 및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공 보 관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 보 관 박 종 홍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홍보기획팀장 박 향 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강 연 찬 (행정 2042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수당 및 원고료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기사</u>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수당 및 원고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고 또는 기사</u>----- -----<u>일정액의 원고료(상품권을 포함한다)</u>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지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독자 참여, 퀴즈, 이벤트,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, 상품권 및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